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	2015. 6. .
제 출 자	이흥희 의원 외 명

1. 개정이유

-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사회적 약자와 범죄행위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제1호, 제2호)
- 나.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(안 제17조)
 - 살인, 성범죄피해를 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 약자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지원대상자는 범죄피해자와 배우자, 직계친족으로 함
 -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
- 나. 예산 조치 : 미편성
- 다. 집행부의견조회 : 기획감사실, 행정과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3) 입법예고 : 2015. 6. . ~ 6. .
 - 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아동·청소년 등”을 “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·다문화 가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범죄행위”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지원계획 수립”을 “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범죄피해 지원)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(살인, 성범죄피해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(장례비와 위로금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에 한정한다.

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.

제18조 제목 “(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)”를 “(지원금의 지급 제외)”로 하고, 본문 및 제3호 중 “장례비 등”을 “지원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사회적 약자”란 <u>아동·청소년 등</u>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.</p> <p>2. “범죄행위”란 <u>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(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설치 및 기능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<u>지원계획 수립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17조(장례비 등 지원) ① 군수는 <u>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(이하 “장례비 등”이라 한다)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장례비 등은 <u>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</u> 군수가 정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“사회적 약자”란 <u>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·다문화가정 등</u>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.</p> <p>2. “범죄행위”란 <u>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 <u>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범죄피해 지원) ① 군수는 <u>범죄행위로 피해(살인,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은</u>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<u>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(장례비와 위로금)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<u>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에 한정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)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<u>장례비 등</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장례비 등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<u>장례비 등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	<p>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.</p> <p>제18조(지원금의 지급 제외) ----- -----지원금----- ----- <u>지원금</u>----- ----- 1. ~ 2. (생략) 3. -----지원금----- ----- -----</p>

[별지 제1호서식]

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

지 원 대상자	성 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경남 거창군				
범죄피해의 사실(내용)						
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						
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						
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						
「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.						
20 년 월 일						
추천자 :						
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의장 귀하						

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17조(범죄피해자 지원)

-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(살인, 성범죄피해자에 한한다.)를 입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(장례비와 위로금)을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결정에 따라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
작성자 : 전문위원 박완목

관계법령

□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(救助)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.

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0.>

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~ ④ (생략)

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훈련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